

중소기업협동조합 휴면지정 공고

중소기업청 공고 제2013 - 118호

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아래의 조합에 대하여 휴면조합으로 지정합니다.

2013. 5. 7.

중 소 기 업 청 장

1. 휴면조합

조합명	소재지	대표자	설립일자	휴면명령 사유
한국육류도소매업 협동조합	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05 (가락아이디파워 1003-2)	김갑수	2009.03.18	- 1년 이상 고유목적사업 실적 없음 - 총회 미개최, 출자금 잠식 등 조합활동 부적격

2. 문의처

- 중소기업청 판로정책과 (☎042-481-4590,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)

3. 유의사항

- 휴면 조합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.
- 휴면 조합은 활동재개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활동 재개신고서와 그에 따른 증빙서류를 중소기업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주무관청은 활동재개신고서를 받고 활동재개를 할 것으로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휴면지정을 해제합니다.
- 위 조합은 공고 후 1년 이내에 활동재개 신청이 없거나, 활동재개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도 활동재개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제13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별도의 청문절차 없이 해산됩니다.